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8일 05시 24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특산품전시판매장 사용허가 및 위탁의 철회	3

특산물전시판매장 사용허가 및 위탁의 철회

2014.04.17 조회수 703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0-0009
담당부서	관광과
상위법령	관광기본법
조례	여수시 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
유형	2호 - 행정질서벌(허가취소 등)
등록사유	관광
법령공표일	기존규제
존속기한	2007-05-31
규제시행/폐지일	2007-05-31
규제내용	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허가 및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. 1.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. 허가조건 또는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한 경우 3. 관련 법규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.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0-0008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0-0016

Yeosu Web Contents

